

OECD 가입과

보건부문 통계의 과제



계훈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OECD의 역할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는 협의체 성격의 국제기구이다.

1961년에 설립된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는 협의체 성격의 국제기구이다.

OECD의 설립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로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다자간 자유무역 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개발분야 중 특정분야만을 다루는데 비하여, OECD는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교육, 고용,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소비자보호 등 경제·사회·복지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로서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OECD의 설립당시에는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참여하였다. 그후 7개국이 신규 가입하였고, 최근에 가입 협정문에 서명한 폴란드와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현재의 회원국은 29개국이 되며, 회원국 중에는 선진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

OECD의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인권 존중의 이념을 지지해야 하며, 동시에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초청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은 정치·경제·사회면에서 동질성을 갖게 되며, 이 점에서 100개

국 이상의 이질적인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OECD는 설립 이후 경제성장의 촉진('6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및 경제위기 극복('70년대), 세계경제의 불황 극복('80년대), 세계경제의 통합('90년대) 등 세계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상위조직으로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의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를 보좌하는 집행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회원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기관인 24개의 위원회와 그 밑에 총 81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자력기구(NEA), 개발센터(DC)와 같은 4개의 독립적 부속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한편 각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3명 그리고 20여개 부서(Directorate, Department 등)에 별도 채용된 1,50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OECD 내부에서는 회원국이 30개국 정도가 되면 신규 가입을 중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 3월에 OECD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OECD에서는 그동안 가입심사와 검토절차를 모두 마치고 1996년 10월 11일에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 초청을 공식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과 OECD 사무총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게 되면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OECD는 세계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OECD의 통계활동과 회원국의 통계 제공의무

OECD는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교육, 고용, 에너지, 과학기술, 소비자보호 등 경제·사회·복지의 모든 분야의 정책에

OECD에서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87개 부문의 각종 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원국의 통계자료 제공은 제규범의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한다.

대하여 관련 위원회별로 소관 부문의 정책을 토의·협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체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위원회별 정책토의 및 협의과정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에 비교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OECD에서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87개 부문의 각종 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 수집은 사무총장 직속의 20여개 부서 중 11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1. 분야별 통계부문수

분 야	부문수	분 야	부문수
① 농어업	4	⑦ 과학·기술	6
② 산업활동	13	⑧ 인구·노동·교육	9
③ 에너지	11	⑨ 무역·국제거래	5
④ 재정·금융	11	⑩ 개발협력	5
⑤ 국민계정	6	⑪ 기 타	12
⑥ 보건·환경	5	계	87

OECD는 정책협의를 위한 기구이지만 회원국이 제공한 각종 통계를 정리·분석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생산하는 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간되는 많은 통계 보고서와 분석보고서는 OECD 사무국 전문가를 물론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 귀중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회원국의 통계자료의 제공은 제규범의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하며, 이는 ‘상호간에 정보 교환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협정문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계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준의 국제표준화와 작성통계의 제공이라는 통계부문의 과제가 대두된다. 통계작성기준의 국제표준화는 기존 OECD 국가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통계작성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3. 보건부문 통계의 내용

보건통계는 교육·고용·노동·사회국(Directorate for Education,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보건부문 통계 외에도 인구, 교육, 고용, 노동, 연금 및 기타 사회 등의 8개 부문의 통계도 수집하고 있다.

OECD에서 수집하는 보건부문의 통계는 1994년 1월까지의 340개 항목으로 알려 졌으나, 1994년 10월에 OECD 보건통계 담당자가 통계청에 직접 보낸 'OECD 보건부문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나라 통계를 수록하기 위한 잠정적인 전산출력 통계 표 양식(Potential Korean Segment of the Datafiles, 1994. 10)'에 의하면 588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 OECD에서는 주불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Mimi-Maj Korea"라는 이름의 PC 디스켓을 보내왔는데, 이 디스켓은 우리나라의 보건통계를 입력토록 마련된 데이터베이스 화일 형태의 디스켓이다. 이와 같은 디스켓은 각 회원국에도 보낸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보건부문 통계작성에 참고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686개의 통계항목(Variable)이 관심영역에 따라 40개의 영역(Chapter)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1960년부터 1994년까지 통계를 입력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계항목이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고 관심영역에 따라 분류됨에 따라, 같은 특성의 항목이 여러 개의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관련 물가지수에 관한 18개 항목이 7개 영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686개 항목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이 표를 보면, 686개 항목 중에는 병의원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이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통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건부문 통계의 과제

가. 통계청의 조정역할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부문 통계에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교

OECD 보건부문의 통계는 686개의 통계항목이 관심영역에 따라 40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건부문 통계에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다른 기관의 통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부, 환경부, 통계청 및 한국은행 소관의 통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계 기관별 통계작성 추진계획 및 이에 따른 통계작성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국가 통계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특성에 따른 OECD 보건부문 통계 항목수

통 계 종 류	항목수
① 기대여명, 조기사망	49
② 보건지출, 의료비 공공부담	75
③ 보건부문종사자 평균수입	14
④ 의료서비스 수가	26
⑤ 보건의료 관련 물가지수	16
⑥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인력	16
⑦ 병상수 및 특수장비	10
⑧ 의료이용	19
⑨ 퇴원환자 평균입원일수 및 퇴원률	186
⑩ 수술 및 내과적 처치	101
⑪ 건강관련 습관, 환경 및 기타	41
⑫ 의약품 생산 및 소비	32
⑬ 의약품 및 기기·장비 수출입	10
⑭ 인구, 교육, 보건관련 경제	91
계	686

나. 통계작성 기준의 비교·검토

OECD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보건통계 항목에 대하여 각각 ①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가, ② 작성되고 있다면 그 작성기준이 OECD의 작성기준과 일치하는가, ③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④ 차이점이 있다면 OECD의 작성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⑤ 당장은 전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는 전환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의 작성기준이 OECD의 작성기준과 다르다면 과거의 통계를 OECD의 작성기준으로 재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 개별 통계항목의 정의 및 관련사항의 영문 번역

통계자료 제출용 “Mimi-Maj Korea” 디스켓에는 40개 영역의 686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96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통계수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통계수치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① 정의(Definition), ② OECD 정의와의 차이점 (Deviation), ③ 자료의 출처 (Sources), ④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도 입력토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첫번째의 정의의 경우에는 정의 그 자체는 물론 관련 법규 및 제도 등도 포함된다(예를 들면, 간호사수의 경우 간호사의 자격요건 등).

따라서 OECD의 통계항목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두어야 한다. 이러한 번역업무는 OECD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도 번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빨리 착수할수록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라. 활용도가 높은 신규통계의 우선작성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 중에는 신규통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신규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OECD에 가급적 많은 항목의 통계를 제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항목수는 적도라도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높은 통계부터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우리나라가 OECD의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면,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87개 부문의 통계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의 하나가 보건부문의 통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의 통계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건부문의 통계는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OECD 기준에 따른 보건통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는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제공은 물론 선진국

신규통계를 생산할 때에는 OECD에 많은 통계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높은 통계부터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의 통계정보 교류 및 국제비교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선진국일 수록 많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OECD 가입을 보건통계 개선 및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통계청, 연구기관, 학계, 의료기관 등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통계의 개선은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때에는 그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 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다.

통계의 개선은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간행물 구독회원 안내

회원 가입안내

- 가입방법: 구독회원 가입신청서를 연구원 간행물 관리실로 제출하고,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납부: 한일은행 019-219956-01-014(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편대체온라인 012468-32-0037242(가입자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도 회원에게만 제공합니다.
- 1996년 10월부터 창간된 월간지 『**보건복지포럼**』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122-040 서울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관리실
- TEL : (02) 353~1570, 355~8003(교환 308, 309)
- FAX : (02) 356-2840, 352-9129